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51

발의연월일: 2022. 11. 8.

발 의 자:김홍걸・양정숙・조승래

김승남 · 김병주 · 주철현

윤미향 • 윤재갑 • 강은미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차산업 관련 기술개 발,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음.

그러나 국내 차산업은 커피 유통산업의 팽창에 따른 커피 소비의 대중화 등으로 인하여 그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차산업의 진 흥과 차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 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에 차가 가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 차 품평회를 통해 차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에 대한 연구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	①
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	
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u>따른 기능성을 말한다)에 대</u>
	<u>한 연구</u>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4조의2(품평회 개최)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
	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차문
	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
	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